



편집자 주

위원회는 ADR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ADR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EU 조정지침'을 게재한다.

EU 조정지침

민사 및 상사 부분에 관한 2008년 5월 2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2008/52/EC 지침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유럽 공동체 창설조약(특히 61(c)조와 67(5)조의 둘째 단), 유럽 위원회의 제안,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의견에 기반하고, EC조약 251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

(1) 유럽 공동체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럽 공동체는 특히 내부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민사부분에 있어서의 사법적 협력 수단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정의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 원칙이다. 정의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이사회는 1999년 10월 15일, 16일에 개최된 Tampera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사법관할 외의 대체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3) 2000년 5월 유럽 이사회는 민사 및 상사법과 관련된 분쟁의 대체적 해결 수단에 대한 결론을 채택하면서,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이 분야에서의 기본원칙 설립은 민사 및 상사 부분 분쟁해결에 있어서 사법관할 외적 절차의 적절한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선언하였다.

(4) 2002년 4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조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회원국과 이해 당사자들이 광범위한 협의의 시작하도록 하는 민사 및 상사 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녹서를 제출하였다.

(5) 자유, 안보 및 정의의 영역 확립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으로써 정의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법관할 외의 분쟁해결 수단뿐 아니라 사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지침은 내부시장의 적절한 기능, 특히 조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6) 조정은 민사 및 상사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른 과정을 통해 경제적이고, 신속한 사법관할 외 분쟁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고, 당사자들 사이의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국경 간 문제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7) 조정을 더욱 촉진하고, 조정에 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사 절차의 주요 사안을 포함하는 기본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8) 본 지침의 규정은 국경 간 분쟁의 조정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이들 규정을 내부의 조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9) 본 지침은 조정 과정에서 현대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0) 본 지침은 양자 또는 다자 사이의 국경 간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민사 및 상사 문제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가족법과 고용법에 빈번히 나타난다.

(11) 본 지침은 계약 전 협상이나 사법적 조정제도, 소비자 불만제도, 중재 및 전문가 결정과 같은 사법적 성격의 과정이나 법적인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권고를 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본 지침은 법원이 당사자들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국내법이 조정을 규정하는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판사가 국내법에 따라 조정자로 활동할 수 있는 한, 본 지침은 해당 분쟁 사안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책임을 맡고 있지 않는 판사가 수행하는 조정에도 적용된다. 본 지침은 그러나 해당 분쟁에 관한 사법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판사에 의한 분쟁해결 과정, 담당 법원 또는 판사가 관련자로부터 지원 또는 조언을 요청하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본 지침에 규정된 조정은 당사자들 스스로가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조정을 조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과정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국내법에 의거, 조정 과정에 시간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여야 한다. 더욱이, 법원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14) 법령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법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막지 않는 한, 본 지침은 의무적으로 조정에 임하게 하거나, 조정을 장려 또는 제한하는 국내법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본 지침은 지침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기존의 자율규제적 조정제도를 침해하지 않는다.

(15)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지침은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이 국경 간 분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어느 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정하여야 한다.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조정을 개시하는 특정한 행위를 취한 시점에 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6) 비밀유지, 추소기간, 시효기간의 효과 및 조정의 결과인 합의의 승인과 이행에 필요한 상호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조정인의 양성과 효과적인 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제장치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17) 회원국들은 시장원리에 근거한 분쟁해결 의지를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는 않는다. 분쟁해결 제도는 조정 과정의 유연성과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일반대중들도 인터넷상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조정인을 위한 행위규약'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의 존재를 인지하여야 한다.

(18) 유럽 위원회¹⁾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합의적 분쟁해결에 관여하는 법원 이외의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범위 내에 있는 조정인과 기관

1)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1/310/EC of 4 April 2001 on the principles for out-of-court bodies involved in the consensual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OJ L 109, 19.4.2001, p. 56).

은 그 원칙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동 권고의 원칙을 존중하는 회원국들의 법원 외 제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9) 조정을 통한 합의의 준수가 당사자들의 선의에 의존한다는 점으로 인해 조정이 사법 절차에 대한 빈약한 대안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회원국들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합의 내용이 국제사법을 포함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법률이 특정한 합의 내용에 집행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회원국들은 합의 내용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합의에 특정된 의무가 그 성격상 집행되지 못하는 것일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0) 회원국에서 이뤄진 집행력 있는 합의는 유럽 공동체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인정되고 집행가능하다고 선언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음의 유럽 이사회 규칙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²⁾ 또는 Council Regulation (EC) No 2201/2003 of 27 November 2003 concerning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matrimonial matters and the matters of parental responsibility.³⁾

(21) 다른 회원국에서도 합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egulation (EC) No 2201/2003은 당사자 간의 합의는 합의가 이루어진 회원국에서 집행될 수 있어야 함을 특별히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본 지침은 가족법 사안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요청된 회원국에서 집행되지 못한 사안을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함으로써 원래 회원국의 법을 회피하게 하는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22) 본 지침은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3) 조정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지침은 추후의 민사 및 상사 분야 사법 절차나 중재에서 조정 과정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당사자 간의 조정 시도가 실패할 경우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들이 법원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본 지침이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국내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조항은(예를 들면 운송법 영역에서의) 본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5) 회원국들은 일반대중이 조정인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 실무자들이 의뢰인에게 조정의 가능성을 알리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6) 보다 나은 입법⁴⁾에 관한 기관 간 합의 34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신과 유럽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본 지침과 전환 조치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테이블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장려된다.

(27) 본 지침은 기본권의 고취를 추구하고,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서 인정된 원칙들을 존중한다.

(28) 본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들만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조치의 규모, 효과 등의 측면

2) OJ L 12, 16. 1. 2001, p. 1. Regulation as last amended by Regulation (EC) No 1791/2006 (OJ L 363, 20. 12. 2006, p. 1).

3) OJ L 338, 23. 12. 2003, p. 1. Regulation as amended by Regulation (EC) no 2116/2004 (OJ L 367, 14. 12. 2004, p. 1).

4) OJ C 321, 31. 12. 2003, p. 1.

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더 잘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는 EC조약 5조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조문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지침은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이상을 강제하지 않는다.

(29)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 공동체 창설조약에 부속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3조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는 본 지침의 채택과 적용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30)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 공동체 창설조약에 부속된 덴마크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1조와 2조에 따라 덴마크는 본 지침의 채택에 참여하지 않으며, 동 지침에 구속되지도, 그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본 지침을 채택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1. 본 지침의 목적은 조정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 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에의 접근과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2. 본 지침은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국경 간 분쟁에 있어서의 민사 및 상사 문제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세입, 관세 또는 행정적 사안이나 국가 권한의 행사에 있어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회원국’은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의미한다.

제2조: 국경 간 분쟁

1. 본 지침이 목적으로 하는 분쟁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날에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상주하는 경우에 발생한 국경 간 분쟁이다.

- (a) 당사자들이 분쟁이 발생한 후에 조정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 (b) 법원이 조정을 명령한 경우
- (c) 국내법에 의해 조정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
- (d) 제5조의 목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이 권유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와 제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항 (a), (b), (c)호에서 해당하는 일자에 분쟁 당사자들이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상주하고 있고, 조정 이후에 회원국에서 사법 절차나 중재를 시작한 경우는 국경 간 분쟁으로 본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주소지는 Regulation (EC) No 44/2001의 제59조와 제60조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조정’은 그것이 어떻게 불리는가에 상관없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체계화된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원하거나, 법원의 제안 또는 명령, 회원국의 법 규정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해당 분쟁에 관한 사법 절차의 책임을 맡고 있지 않는 판사가 행하는 조정을 포함한

다. 그러나 해당 분쟁해결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법원 또는 판사에 의한 조정은 제외한다.

(b) '조정인'은 관련 회원국에서 불리는 명칭, 직업 또는 조정을 수행하도록 임명되거나 요청받은 형식과 상관없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

제4조: 조정의 질적 보장

1. 회원국들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조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조정인과 조정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위규약을 도입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조정인의 초기 및 사후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 조정 회부

1.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법원은 또 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션(session)이 개최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정보 세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2. 본 지침은 법률이 사법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권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법 절차의 개시 전후와 상관없이 조정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독려 또는 제재하는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력

1. 회원국들은 당사자들 또는 다른 당사자들의 명

시적 승인을 얻은 일방 당사자가 조정으로 도출된 서면 합의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된 합의는 집행 요청이 이뤄진 회원국의 법률에 저촉되거나 회원국의 법률이 그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행력을 가진다.

2. 합의 내용은 집행 요청이 이루어진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판결, 결정, 인증문서를 통해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집행 요청을 접수받을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을 유럽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본 조문은 집행력 있는 합의를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조정의 비밀유지

1. 특별히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조정은 비밀유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인과 조정 과정에 행정적으로 관여한 자가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민사 및 상사 관련 사법 절차 또는 중재를 위해 제공하도록 강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a) 어린이의 이익 보호나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일체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 해당 회원국의 우선적 공공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b) 조정으로 도출된 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합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수단을 규정하는 회원국의 법률 제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8조: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조정의 효력

1. 회원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을 선택하는 당사자들이 조정 과정 중에 출소기간 또는 시효기간이 만료하여 추후 해당 분쟁과 관련한 사법 절차 또는 중재를 이용하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회원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약의 출소기간과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9조: 일반대중을 위한 정보

회원국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일반대중이, 특히 인터넷상에서, 조정인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관할 법원과 기관에 대한 정보

유럽 위원회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전달한 관할 법원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

2016년 5월 21일까지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및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본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유럽 연합 전반에서의 조정의 발전과 회원국에서의 본 지침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보고서

는 본 지침의 수정을 위한 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전환

1. 회원국들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본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대한 적용은 2011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회원국들은 유럽 위원회에 이를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채택하는 조치에는 본 지침이 직접 참조되어 포함되거나, 해당 조치를 공식 공포할 때 지침을 첨부하는 식으로 지침의 참조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참조의 방법은 회원국들이 결정한다.

2. 회원국들은 본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한 국내법의 주요 조항들을 유럽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발효

본 지침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제14조: 수신자

본 지침은 회원국들을 수신자로 한다.

2008년 5월 21일 Strasbourg에서 채택.

유럽 의회 의장 H.-G. PÖTTERING
 유럽 이사회 의장 J. LENARČIČ

